

	모집단위개편및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3-4-7
		제정일자	2016.11.01.
		개정일자	2024.01.01.
		개정차수	4차
		소관부서	전략기획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집단위(이하“학과”라 한다)의 개편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모집단위 개편 및 정원조정’(이하“학과개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전략기획처에서 관장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과개편 대상은 대학 학칙 제4조에서 규정된 학과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이란 대학에 없던 교육편제단위가 신규로 개설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이란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과를 1개 학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3. ‘폐지’란 학과의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4. ‘변경신설’이란 학과의 교육목표와 인력양성유형의 변경이 없이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정원조정’이란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학과개편의 원칙) 학과개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2. 교육부 구조조정 결과 조치에 필요한 경우
3.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 등 대외 경쟁력 제고 목적에 필요한 경우
4. 학과별 경쟁력 강화 등 대학의 자체 구조조정 목적에 필요한 경우
5.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
6.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

제6조(학과개편대상 학과의 선정) 삭제 <2024.01.01.>

제7조(학과개편의 절차) ① 학과개편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학과개편 분석 및 계획수립
 2. 삭제 <2024.01.01.>
 3. 삭제 <2024.01.01.>
 4. 삭제 <2024.01.01.>
 5. 교무위원회 심의
 6. 교수회 심의
 7. 대학평의원회 심의
 8. 총장의 승인
- ② 학과 신청에 의하여 학과개편을 하는 경우에는 학과개편신청서[별표1]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 ③ 삭제 <2024.01.01.>
- ④ 삭제 <2024.01.01.>

제8조(후속조치) ① 학과개편에 따라 통합 또는 폐지된 학과의 교원은 다른 학과로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속변경에 대한 심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소속변경 학과와의 전공 관련성, 교과목에 대한 강의능력
 2. 소속변경 학과의 교원 및 학생 수, 교육과정 및 강의담당시간 편성 등
 3. 소속변경 학과 소속 교원의 의견 등
- ② 대학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전임교원의전공전환지원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대학은 통합, 폐지가 결정된 학과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졸업 시까지 기존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④ 대학은 통합, 폐지가 결정된 학과 학생이 희망할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교원양성학과), 2호(의료인)에 해당하는 학과를 제외한 모집단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한다.
- ⑤ 학과개편 승인 후 교원인사, 공간조정,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